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2조)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전체)
- 다. 상위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
- 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 (현행 제10조)
-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2022. 9. 13. ~ 2022. 10. 3. (20일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  
고,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  
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심의위원회의 위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게”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로, “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를 “**심의위원장이 사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을 “**심의위원장 및**”으로, “위원장이”를 “**심의위원장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심의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 중 “위원회의 운영”을 “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u></li> <li>2. <u>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li> <li>3. <u>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u></li> <li>4. <u>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u></li> </ol>	<p>제2조(구성) ① ----- ----- ----- ----- <u>“심의위원회”</u> ----- ----- ----- <u>15명</u> -----.</p> <p>② <u>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u>----- ----- -----.</p> <p>③ <u>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  
-----.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장-----  
-----.

②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  
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 심의위  
원회의 위원이 -----  
-----  
-----.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  
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  
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  
한 경우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  
회-----  
-----  
-----  
-----.

② ----- 심의위원회의 위  
원에게 -----  
----- 심의위원회에 -----  
----- 심의위원회는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위  
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략)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심의 안건 중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생략)

② 심의위원장이 사고 -----  
-----  
-----.

③ 심의위원장 및 -----  
----- 심의위원  
장이 -----  
-----.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장-----  
-----.

② 심의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  
-----  
-----  
-----  
-----.

<삭 제>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생략)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 심의위원장-----  
--- 심의위원회-----.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의 비공개) ① 심의위원회  
회-----

② 심의위원회-----  
-----.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  
-----.

제13조(운영세칙) -----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심의위원회의 의결--- 심  
의위원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를 규정하여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 4.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7급 이은주(02-330-4913)

## 관계 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12.29.,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7. 1.] [대통령령 제331843호, 2021. 6. 29., 일부개정]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29.]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 또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려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가정위탁보호자, 아동복지시설의 장, 전문치료기관의 장 또는 요양소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본조신설 2016. 9. 22.]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1. 6. 29.>]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4. 그 밖에 아동의 복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본조신설 2021. 6. 29.]